

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7. 4. 21.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7. 4. 22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

- 제5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총무위원회 제6차회의(97.5.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민복지국장 김경호)

가. 제안이유

-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에 관한 업무가 시립도서관의 소관사무이므로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의 위원 중 시립도서관장 삭제(안 제2조제3항)
 - ※ 시립도서관장은 간사임
- 간사 및 서기 변경(안 제6조)
 - 현행 : 간사(문화체육과장), 서기(문화계장)
 - 개정 : 간사(시립도서관장), 서기(관리계장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없음	없음

4. 토론요지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246호
의결년월일	97. 5. 7. (제53회)

제출년월일 : 1997. 4. 21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에 관한 업무가 시립도서관의 소관사무이므로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의 위원 중 시립도서관장 삭제(안 제2조제3항)
 - ※ 시립도서관장은 간사임
- 간사 및 서기 변경(안 제6조)
 - 현행 : 간사(문화체육과장), 서기(문화계장)
 - 개정 : 간사(시립도서관장), 서기(관리계장)

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도서관 및 문고와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제6조 중 “문화체육과장”을 “시립도서관장”으로 하고 “문화계장”을 “관리계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①~②(생략) ③ (생략) 1. <u>시립중앙도서관장 및 도서관, 문고와 관련있 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</u> 2~3. (생략) ④ (생략)	제2조(구성)①~②(현행과 같음.) ③ (현행과 같음) 1. <u>도서관 및 문고와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</u> 2~3. (현행과 같음) ④(현행과 같음).
제6조(간사 및 서기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, 간사는 <u>문 화체육과장</u> 으로 하고, 서기는 <u>문화계장</u> 으로 한 다.	제6조(간사 및 서기) <u>시 립도서관장</u> <u>관리계장</u>